

II - 10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기준(아르바이트)

질의

신청번호 1AA-1907-538069(2019.7.23.)

- 주중에는 산림기술용역업체에서 상시 근무하고, 주말에 가끔식 양말공장 업체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한 후 시간제로 근무 중일 때,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?

답변

-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"산림기술법"이라 한다.)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,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「산림기술법 시행령」 별표 4 비고 제1호 가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림기술 용역업의 등록요건인 "기술인력"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따라서, 주말에 한정하여 시간제 고용원으로서 산림기술과 무관한 업체에 근무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II - 11 산림사업법인 및 엔지니어링업체 소속 기술인력 중복 가능여부

질의

신청번호 1AA-1908-258382(2019.8.14.)

- 「산림기술법」 시행전,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업체 소속의 기술자 A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항이 이중 취업에 해당되는지?

답변

- 구 「산림자원법」(2017.11.28 법률 제15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0조제4항에서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, 다른 사람이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는 산림기술자가 '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전제로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업체'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 당시 기술인력으로 제출한 기술자 A가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한 것은 이중 취업에 해당됩니다.
- 위에 대한 답변은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사례 '안건번호 15-0106'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II - 12 법인 소속 산림기술자가 기타현장 단기 근무 가능여부

질의

신청번호 1AA-2002-0590134(2020.2.25.)

- 산림사업법인(A)에 소속된 산림기술자(기능1급)가 소속법인에 일거리가 없을 경우 다른 산림사업법인(B)의 사업장에서 작업원으로 단기간 근무를 해도 되는지?

답변

-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'산림기술법' 이라 함)」제11조제4항에 산림 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,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다른 산림사업법인(B)의 현장에서 산림기술자로 등록되어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「산림기술법 시행규칙」 [별표 2](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)에 따라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, 2차 위반 시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II - 13 산림기술자 이중취업

질의

신청번호 1AA-2008-0519787(2020.8.14.)

- ☑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원목생산을 등록한 A업체의 산림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산림기술자 B가 본인 명의로 원목생산업체 C를 등록하였다면 산림기술자 B는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'산림기술법'이라 함)」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해당하는지?

답변

- 「산림기술법」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처분,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산림기술자 B가 A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고 본인 명의 C업체의 대표인 경우(기술인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)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, A·C업체에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전제로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경우 「산림기술법」 제12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취업한 것으로 보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산림기술자 B가 A업체에서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, 사업장 등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「산림기술법」 제12조 제1항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II - 14 시간선택제 근무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

질의

신청번호 1AA-2009-0566587(2020.9.17.)

-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시간선택제(예 :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)로 근무하면서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로 하지 않은 회사(산림사업과 무관)에 취업할 경우 「산림기술법」 제11조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인지?

답변

-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‘산림기술법’이라 함)」제11조제4항은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A, B업체에 취업했을 경우에 해당하며, 귀하의 경우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의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업체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